

## UR협정과 Codex의 관계

송 인 상 / 한국식품연구소 식품연구부장

**필자주** 본고는 식품공업 '93년 9월호(Codex에 대한 이해와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94년 4월호(UR협정과 Codex의 앞으로 역할에 대한 이해)에 게재하였던 내용중, 그때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여, 잘못 이해되었던 부분과 새로히 밝혀진 내용을 위주로 재작성한 것이다. 또한 본고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간하는 무역정보지 (94년 8월호)에 게재되었던 내용중 일부분만을 게재재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 1. UR협정 타결에 따른 Codex의 위상 변화 예측

지난 7년간 계속되었던 제8차 다자간 협상(라운드)인 UR협정이 93년 12월 15일 타결되었고, 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있었던 각료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의 이행계획서 검증과 최종의정서 및 WTO 설립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와함께 각국의 국회비준 등 필요한 국내조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GATT를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95년 1월 1일 이후에는 WTO가 발족될 예정이고, 동시에 각종 협정문의 발효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같은 UR협정의 타결에 따라 세계경제질서는 “국경없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자간주의와 지역주의”, “협력과 경쟁”이 혼재하는 치열한 국제화 경쟁시대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와함께 EC, NAFTA등 경제블록화 추세와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

리나라의 OECD 가입등 많은 국제환경변화는 식품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UR협정에서는 대단히 많은 분야가 타결되었고, 각 분야는 직·간접적으로 식품산업 및 식품위생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Codex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다음 두가지 협정이 가장 깊게 연계되어 있어, 이를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문(SPS 협정문: Agreement on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본 협정문은 본문 46조(적용범위에 대한 조항, 각국의 기본권리 및 의무, 조화, 위해평가 및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의 적정 보호수준 판단, 동등성의 인정, 해충 또는 질병발생자유지역 및 저해충 또는 질병발생 지역 등 지역조건의 채택, 관리, 검사 및 인증제도, 기술지원, 특별대우, 협의 및 분쟁 타결, 행정, 적용, 최종규정)와 3개의 부속

서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협정문에는 식품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검역사항도 포함하고 있지만, 식품관련 사항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식품중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잔류수의약품,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와 관련된 모든 기준·규격, 지침서, 분석방법 및 위생과 직접 관련된 포장 및 표시규정을 국제간에 인정된 국제기준·규격의 채택을 통하여 국제간에 서로 조화시키거나, 만약,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위해평가를 근거로 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상기 4개분야의 회원국의 기준·규격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때 국제간에 인정된 국제기준·규격이란, GATT 사무국의 설명서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식품의 안정성 규격과의 조화라 함은 Codex에서 설정한 규격에 근거함을 의미한다”(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food safety standards would mean basing national requirements on the standard develop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이하생략)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한 4가지 분야에 대하여 Codex가 설정한, 또한 앞으로 Codex가 설정할 기준·규격은 각국이 준수하여야 할 강제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수입식품에 적용할 상기 4가지 분야에 대한 기준·규격을 Codex의 기준·규격과 일치시키거나,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예를들면 쌀에 대한 잔류농약기준 등)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협정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본 협정문을 식품관리분야에서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SPS 협정문에서 정의된 4개 분야 이외의 식품관련 모든 기술장벽에 적용되는 협정문으로써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여부를 평가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

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술장벽이란 “포장, 표시, 등급표시 요구를 포함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 강제적 성격의 규격)과 표준(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특히 UR협정에서는 최종제품에 적용하는 규격뿐만 아니라 “ISO 9000 계열”등과 같은 품질시스템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공정 및 생산방법(PPMs : processens and production methods)”까지를 기술규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식품의 위생규정 이외의 식품과 관련된 모든 규제는 본 협정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BT 협정과 Codex와의 연관은 현재로 아주 깊다고 할 수는 없다. 즉 TBT 협정측면에서 우리가 상기한 4가지 분야 이외의 Codex 기준·규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다만 앞으로 확정될 TBT 위원회의 세부방침은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 다. Codex와 UR과의 앞으로의 연계

1994년 4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에서는 Codex와 UR협정과 연계가 주요의제로 논의되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Codex는 UR협정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의 운영방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Codex의 기준·규격은 그 적용범위가 SPS협정에서 말하는 위생의 개념보다 대단히 넓고, SPS협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식품의 영양표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Codex의 모든 기준·규격을 UR협정과 완전히 일치시킬 경우, Codex 규격이 강제화 됨으로써, Codex 규격 채택시 각국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져 근본적으로 채택이 어려워지고, Codex 작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토의하기 위하여 95년 7월 Codex 총회 이전에 당분과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기로 하여, 앞으로의 상황변화는 현재로 예측이 지난하

다. 이와함께 앞으로 구성될 SPS 위원회 및 TBT 위원회의 결정사항도 Codex의 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 우리의 대응방안

Codex에의 대응방안은 크게 수입되는 식품의 관리 측면에서의 정부의 대응방안과,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식품산업의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기술해 보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식품도 수입국에서 보면 수입식품이므로, 이 두가지 대응방안은 깊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분리가 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누어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수입식품 관리 측면에서의 정부의 대응방안

SPS협정의 타결에 따라, 각국은 자국이 유지하고 있는 식품관련 규격중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잔류수의약품,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관련 규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Codex의 관련 규격을 이용할 것으로 보임)과 일치시키거나,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 이에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기준·규격 설정의 담당부서인 보건사회부에서는 “국제화작업반”을 구성하고, 국립보건원 및 한국식품연구소와 함께 수입식품에 적용되는 상기 4가지 규격의 국제간 조화, 즉 Codex 규격과의 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출면에서 생각해 보면 타국들도 이와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상기 4가지 규격은 국제적으로 서로 조화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상기 4가지 분야에 대하여는 Codex에서 계속적으로 기준·규격 설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되는 Codex 분과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 “Codex 잔류수의약품 분과위원회”)와 각 식품별 기준·규격에도 관련

규격이 설정되고 있으므로 이들도 일부 포함되어야 하며,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 및 “Codex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의 기준·규격 설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 반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식품 관련 기준·규격에는 상기한 4가지 규격 이외에, 표시기준, 품질기준, 유통기준 등 여러가지가 있고,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기타의 기준·규격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TBT 협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TBT 협정상에 관리되는 기타 기준·규격은 과학적 근거 이외에, 기술적 사항, 그 사회의 여건 및 정당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밖에 없어 국제간의 조화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TBT협정에서도 각종 기준·규격을 국제간에 인정된 기준·규격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후, 지역 또는 기술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간에 인정된 기준·규격에 근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식품의 관리측면에서만 본다면, Codex 식품별 규격, 기준, 표시기준 등 기타의 기준·규격은 현재로는 별 의의가 없고,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참고, 이용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TBT협정의 해석 및 운영방안에 따라, 어느정도의 가변성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의 의견 반영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 나. 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Codex의 지금까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odex가 식품의 수출촉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Codex의 기준·규격이 강제성이 없는 각국이 수락해 주기를 권고하는 임의 성격의 기준·규격이어서, 각국의 수락, 적용이 극히 저조하였고, 지금까지 GATT 20조와 TBT상, 식품위생 관련 기준·규격을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각국이 나름대로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이 기준·규격에 일치하는 식

품의 수입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식품이란 그 특성상 대단히 다양하고, 지역에 따른 차이가 커서 일률적인 규격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다.

물론 Codex의 규격·기준은 각국의 식품 품질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고, 특히 개발도상국중 식품수출국에는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예를들어 타일랜드의 경우, 1969년 국가 Codex 위원회를 설립하고 Codex의 규격·기준·규범 등을 적용하여 1989년에는 1969년의 12배가 넘는 48억불의 식품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UR협정 타결에 따라, 일부분이는 하지만, 오염물질 등에 대한 각국의 기준·규격의 국제간 조화가 강제화 되고, 이에 Codex 규격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식품의 수출촉진 측면에서도 Codex에 대한 이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외에 Codex 기준·규격을 우리나라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참고서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Codex 규격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발생되었던 “Codex 김치규격” 오보사건(?)도 우리가 Codex에 대한 이해를 좀더 명확히 하고, 올바른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Codex 김치규격”을 우리나라가 발의하여 설정된다고 하여도, 각국이 이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과 같이 어떠한 배타적 특권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규격내용에서도 각국의 의견 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만 유리한 어떠한 조항의 삽입도 불가능한 것이다.

만에 하나, 우리에게만 유리한 조항이 삽입되어 설정된다면, 타국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만 수락하게 되어, 김치의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김치 수입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시말해서 어떠한 제품의 Codex 규격을 설정하여, 그 규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원료의 생산이나 제

조기술상 타국이 넘볼수 없는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이와같은 사항이 우리의 대응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Codex에는 200여개 이상의 식품별 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와같은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이 촉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김치에 관한한 자타가 인정하는 중주국인 우리나라가 “Codex 김치규격”을 발의하여 설정하는 것은, 국민 감정상 또한 김치에 대한 성가 및 인식의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나, Codex 규격 설정을 특허권 획득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기대는 금물이며, Codex 규격 설정 작업과 함께 김치용 원료 생산과 제조기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연구개발도 같이 병행 또는 선결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Codex 김치규격”의 설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에대한 작업은 식품규격의 설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회부에서 수입김치의 관리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촉진 및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산업의 Codex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dex 규격·기준에 대한 연구 및 이해의 증진이 요구된다. 국제 식품규격의 조화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역으로 말해보면 우리나라의 식품수출도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같은 장점을 최대한으로 취하기 위하여는 먼저 Codex 규격·기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깊은 연구가 먼저 선결되어야 하겠다.

이와같은 작업을 위하여 업계 자율적인 위원회, 예를들어 식품표시 등 일반과제를 다룰 위원회와 식품별 규격을 다룰 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Codex 활동에 대한 의견종합 및 대정부 전달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본 과제는 상기 과제와 연계시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특히 업계 의견의 대정부 전달기능을 강화하여, Codex 한국대표단을 통하여 업계 의견이 충분히 규격·기준의 개정 및 설정시

반영되도록 되어야겠다.

셋째, Codex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odex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으므로 식품업계에서도 Codex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되어야겠다. 이와같은 Codex 활동에의 참여란 업계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의 작업내용의 검토, 회의참석 등을 포함한다.

이와함께 Codex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자료수집 방안 및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참여방안도 강구되어야겠으며 Codex 각 분과위원회 외에 식품업계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JECFA)
  - FAO/WHO 합동 잔류농약회의(JMPR)
  -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관한 국제자문단그룹(ICGFI)
  - FAO 산하 식품관리 및 소비자 보호국(FC & CP)
  - 국제소비자연맹(IOCU)
  - WHO 산하 건강 및 환경위원회
  - GATT(앞으로 WTO 특히 SPS 위원회 및 TBT 위원회의 활동에 좀더 많은 관심 및 참여가 요구된다)
  - OECD의 관련 위원회(Codex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GLP, 유해물질 관련 위원회 등)
- 넷째, Codex 규격·기준에 대한 교육강화

가 필요하다. Codex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결과는 식품업계 종사자에게 폭 넓게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Codex에서 제정한 규범은 현재 식품업계의 위생수준 향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의 최대한 활용이 요구된다.

### 3. 결 언

지금까지 UR협정 타결에 따른 Codex의 위상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두서없이 개진하여 보았다.

우리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국제환경의 변화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많은 장점을 취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Codex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다고 하겠다.

물론 현재로 보면 SPS위원회와 TBT 위원회의 활동이,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고, 이에대한 대응이 먼저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Codex를 통한 식품관련 기준·규격의 국제간 조화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므로, Codex를 좀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고에 개진된 모든 평가 및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식품연구소의 공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